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
전문공보관 인권감독관 장성철
전화 031-739-4250 / 팩스 031-739-4740

보도자료
2021. 1. 29.(금)

제 목 사회복지법인 K 후원금 횡령 등 고발사건 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- 관련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(제10조 제1항 제3호)
 - 피의자, 처분일시, 죄명, 처분주문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0조 제2항)

-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(부장검사 허정)는, 사회복지법인 K 후원금 횡령 등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,
 - **사회복지법인 시설장 및 사무국장**이 직원 급여보조금 5,100만원, 간병비 지원금 1억 6,000만원, 학예사지원금 2,900만원 등을 부정수급하고, 사회복지법인이 용역 대금으로 받은 1,400만원을 횡령하고, 시설에 거주하는 할머니의 대체전표를 위조하여 예금 6,000만원을 사회복지법인 시설 계좌로 송금한 사실,
 - **시설장**이 2013년~2019년 7년 간 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관할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00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한 사실, 사회복지법인 시설 공사비로 7억 1,0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,
 - **사무국장**이 사회복지법인이 받은 보조금 396만원을 횡령한 사실 등을 각 확인하여,
 - 전일(1. 28.) 시설장 및 사무국장, 공사업체 관계자 등을 **각 불구속 기소**하였음
- 그 외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횡령 혐의, 기타 운영진들의 공모 혐의 등에 대하여는, 증거 불충분하여 불기소 처분하였음

1 피고인

● 피고인

- A○○(59세, '사회복지법인 K' 前 시설장)
- B○○(51세, '사회복지법인 K' 前 사무국장)
- C○○(54세, 공사업체 대표)

2 주요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

● A○○, B○○의 공동범행

- 2012. 4. ~ 2015. 3.경 사회복지법인 K에서 홍보 업무를 하던 직원을 마치 시설에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위생원인 것처럼 꾸며 합계 약 5,1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함 [사기, 지방재정법위반]
- 2013. 3. ~ 2014. 3.경 사회복지법인 K가 ○○대학교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1,400만원을 보관 중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함 [업무상횡령]
- 2012. 6. ~ 7.경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거주하는 ○○○ 할머니가 사망한 후, 위 할머니 명의의 대체전표를 위조하여 농협에 예치된 예금 합계 약 6,000만원을 사회복지법인 시설 계좌로 이체함 [사기]
- 2018. 4. ~ 2019. 12.경 간병비를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 15일간 전일제로 근무한 간병인을 마치 30일간 반일제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합계 약 1억 6,000만원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함 [사기]
- 2009. 5. ~ 2010. 12.경 ○○스님을 사회복지법인 소속 학예사인 것처럼 꾸며 학예사지원금 약 2,900만원을 부정 수급함 [사기]

※ 공소시효 임박하여 '20. 12. 23. 분리하여 불구속 기소함

● A○○, C○○의 공동범행

- 2017. 6. ~ 12.경 사회복지법인 제2역사관 신축공사를 하면서, 마치 공개입찰을 거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구비하여 합계 5억 1,0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함 [특경법위반(사기), 지방재정법위반]
- 2019. 6. ~ 12.경 사회복지법인 생활관 증축공사를 하면서, 마치 공개입찰을 거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구비하여 합계 2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함 [사기, 보조금법위반, 지방재정법위반]
- 2020. 2.경 사회복지법인 공사 관련 감사관들에게 공개입찰을 거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감사 업무를 방해함 [업무방해]

● A○○

- 2013년~2019년 7년 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, 약 100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함 [기부금품법위반]

● B○○

- 2013. 6. ~ 12.경 사회복지법인이 광주시로부터 받은 인건비 보조금 396만원을 임의로 사용함 [업무상횡령]

3 수사 경과

- '20. 3. 17. 고발장 접수(수원지검), 3. 18. 당청으로 이송(범죄지 관할)
- '20. 3. 23. 경찰에 수사지휘
- '20. 12. 21. 경찰, 사건 불구속 송치
- '21. 1. 28. A○○, B○○, C○○ 불구속 기소

4

참고 사항

-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점 고려하여, 기록을 신속·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하였음
 - 주된 혐의인 사회복지법인 운영진들의 후원금 횡령에 대하여는, 증거 부족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하고,
 - 일부 피고인들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, 보조금 부정수급 등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하였음
-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예정임 ☒